

청년활동지원사업 직권취소에 대한 철회 촉구 결의안 검 토 보 고

1. 발의자 및 발의경과

- 의안번호 : 1384
- 발 의 자 : 서윤기 의원 외 78명
- 발 의 일 : 2016년 8월 19일
- 회 부 일 : 2016년 8월 22일

2. 주문

- 서울시의회는 청년 구직의 긴급성에 대한 지원의 필요에 동의하고 선정된 청년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직권 취소를 철회할 것을 결의하고,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예산안의 결에 대한 무효 청구 소송 취하를 촉구함.

3. 제안이유

- 청년들이 구직을 원하는 범위는 워낙 다양해지고 이미 산업 사회의 접근법으로는 통할 수가 없을 정도로 다양해지고 있음. 서울시를 포함한 우리사회에 청년의 구직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의무임.
- 서울시는 청년들의 극심한 취업난 해결의 일환으로 청년활동지원사업 도입을 통해 최장 6개월 매월 50만원의 활동지원금은 청년이

자신의 미래에 투자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을 보장하려고 했으나, 정부는 현금 50만원만 강조하면서 청년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 다면서 사업의 추진을 반대하고, 급기야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회를 대상으로 청년활동지원사업 예산안의결 무효 청구 소송을 제기 하고, 8월4일에는 서울시에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에 대한 직권취소 처분을 하여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이 중단된 상태임.

- 따라서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안의결 무효청구 소송과 직권취소에 대한 철회를 통해 청년들의 활동지 원을 보장해 줄 것을 기대함.

4. 이송처

- 국회,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5. 검토 의견

- 본 결의안은 최근 취업난, 주거불안, 학자금 부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자 하는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직권취소를 철회할 것을 결의하고,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예산안의결 무효 청구 소송을 취하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임.
-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29세 청년 중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에게 (최소) 2개월 ~ (최대) 6개월까지, 월 5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 ※ 2016년 청년활동보장 소요예산은 75억원임(500천원*3,000명*5개월).

〈 사업 개요 〉

- **지원대상: 만19~29세의 미취업 청년 3,000명**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서울 거주

※ 제외대상

- 대학교 또는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포함),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자
- 주 30시간 이상 취업자로 정기소득이 있는 자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지원사업 이나 유사사업에 참여중인 자

- **선정기준: 정량적지표로 우선 선발 후 정성적 평가 시행(붙임 참조)**

- (정량적 지표) 가구소득, 부양가족 수, 미취업기간, 학력 등의 경제·사회적 조건
- (정성적 지표) 사회활동참여의지, 진로계획의 구체성, 적절성 등

- **지원내용: 금전 및 비금전적 지원(권장사항)**

- (금 전) 매월 50만원 × 최장 6개월간 지급
- 첫 달은 지원신청서를 근거로 지원금 지급, 두 번째 달부터 등록된 활동기록을 근거로 지원금 지급 ※ 6개월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자격상실 시 지급 중지
- (비금전) 커뮤니티 지원, 사회참여 활동을 위한 정보제공 및 현장연계

- **지원범위: 취·창업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 (취·창업) 시험등록비 지원, 자격증 취득과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학원수강비, 교재구입비, 그룹스터디 운영비 지원, 비급여형 인턴활동 지원비 등
- (사회참여) 자원봉사, 공익활동, 도시재생, 지역협력 활동 등

-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민간의 전문성을 활용)**

- 전문기관 선정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 등, 매니저를 통한 활동 지원 등

- 서울시는 청년활동지원사업이 사회보장법상의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¹⁾임에도 불구하고 ‘청년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관점에서 보건복지부와 6개월간 성실히 협의에 임해왔다고 하나, 중앙정부가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해 검토한 결과, 핵심항목(급여항목, 성과지표)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난 8월 4일에 직권취소를 하였음.

〈 협 의 경 과 〉

<p>① 보건복지부 협의요청서 발송 및 사전협의('16.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요청서(수정안 포함) 발송(3회), 협의 촉구(2회) 및 사전 협의 등(4회)
<p>② 보건복지부 부동의(수정 후 재협의)통보('16. 5. 2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보완* 사항대로 재설계시 금년도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여 '17년도 초에 복지부와 함께 사업평가를 실시, 본 사업으로 지속여부를 검토” 회신 * 성과지표 제시, 급여항목(활동범위)제한, 모니터링방안 재설계 등
<p>③ 보건복지부에 대한 유감표명('16.5.26.) 및 수정안 발송('16.6.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의에 대한 유감 표명 및 사업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 및 청년당사자들과 협의 지속 → ‘수정안’ 발송 ※ 보건복지부 협의의견을 반영하여 회신
<p>④ 보건복지부의 우리시 수정안에 대한 수용 통보(구두) 및 결과보고(동아일보, '16.6.15.자)</p>
<p>⑤ 보건복지부, 해명자료 발표(수용→1차 재검토→2차 불수용, '16.6.15.)</p>
<p>⑥ 서울시, 구두합의 근거로 사업추진 및 입장발표('16. 6. 2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 사업시행 합의 동의는 없었음, 강행에 유감이며 사후조치 검토
<p>⑦ 보건복지부,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최종 부동의('16. 6. 30.)</p>
<p><input type="checkbox"/> 복지부는 서울시가 지난 6월 10일 복지부의 1차 검토의견*을 반영·제출한 청년활동지원사업 수정안을 검토한 결과,</p> <p>* 4개 항목에 대한 보완요청 : ①대상자 기준의 객관성 확보 ②급여항목을 취·창업 연계항목으로 제한 ③급여지출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마련 ④성과지표 제시</p>

1) <주요 쟁점>

항목	보건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의 성격	청년수당은 사회보장사업 o	청년수당은 사회보장사업 x
협의를무화 여부	사회보장법상 협의필요	협의대상 아니다
예산안 의결 적법 여부	협의완료 없는 예산안 의결은 위법	예산안 의결은 지방의회 고유권한
국가 정책 관련성	청년수당은 국가 정책에 반해	청년들이 원하는 것이 국가정책, 오히려 부합

- 핵심항목(급여항목, 성과지표)에 대한 보완이 되지 않아, 현 상태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무분별한 현금지급에 불과할 것으로 판단.
- 특히, '급여항목'과 관련, 서울시는 취·창업과 무관하게 자기소개서에 일반적으로 기재할 수 있는 개인활동까지 폭넓게 인정할 계획으로,
 - 이는 사실상 지원금의 용처를 제한하지 않고 직접적 구직활동과 무관한 활동까지 지원하게 되어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
 - * (관광가이드 취업 희망자) 개인관광 비용 신청, (게임프로그래머 희망자) PC 방 이용비·게임비 신청, (요리사·음식점 창업 희망자) 식사비·맛집 탐방비 신청 등
 - 또한, 성과지표의 경우 서울시가 제시한 '청년활력지수'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측정방법 등이 주관적이어서 사업 효과성 평가에 부적합할 것으로 판단

⑧ 보건복지부,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시정명령(16.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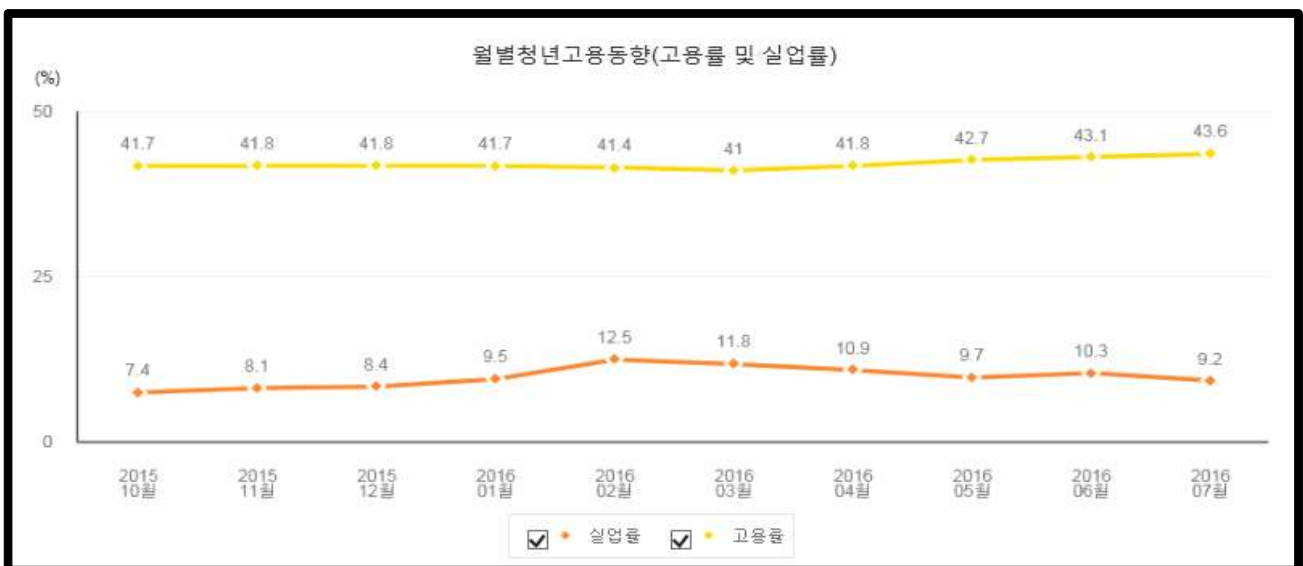
⑨ 보건복지부,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직권취소(16.8.4.)

- 지방자치법 제169조제1항에 따라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결정 처분 취소

⑩ 서울시, 보건복지부 직권취소에 대한 대법원 소 제기(16.8.19.)

○ 현재 청년실업 문제는 한국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이며 이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의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임.

- 청년실업률은 역대 최고치를 지속 갱신하고 있으며 2016년 7월 청년 실업률은 9.2%에 달하고 있는 등 청년층이 겪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주: 청년실업을 “15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 중에서 일할 능력과 의욕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으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로 정의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본 사안에 대한 직권취소는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2)에 보장된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개입하여 원천 무효로 하거나 중단하게 하는 것으로 헌법상 보장된 제도를 제한할 수 있다는 측면과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3)의 ‘협의’는 당사자 간의 의사소통이라는 절차적 의미이며, 사회보장제도의 최종적인 결정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하겠음.
- 한편, 고용노동부는 서울시 청년활동 지원사업의 정책 목표와 취지, 원리와 유사한 정책으로 취업성공패키지4)에 참여 중인 취업알선단계 청년에게 수당을 지급하기로 발표하여 정부도 청년활동지원에 대한 취지에는 방향성에 있어서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헌법에 명시된 지방자치권 보장차원에서 서울시 청년활동 지원사업 직권취소 철회에 대한 충분한 재검토 등을 통하여 현재 어려움에 처해있는 청년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전문위원 : 김태한
입법조사관 : 신정희

2) 제117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3)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 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4)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진단·경로설정→의욕·능력증진→집중 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체계(<http://www.work.go.kr/pkg/succ/content01/busilInfo.do>)